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04
----------	-------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 의 자 : 지성호 · 김성원 · 이 용
김희국 · 권명호 · 권성동
정우택 · 박대수 · 한무경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연설 · 방송 ·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편집 · 가공 영상물 등의 방법이 허위사실공표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타의 방법에 포함되어 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상물 등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허위사실공표 방법의 예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허위사실공표의 방법에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

여 만든 영상물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0조제1항 중 “宣傳文書 기타”를 “선전문서·영상물등(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경우를 포함한 영상물·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타”로, “宣傳文書を”을 “선전문서·영상물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宣傳文書 기타”를 “선전문서·영상물등 기타”로, “宣傳文書を”을 “선전문서·영상물등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 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 ・放送・新聞・通信・雜誌・壁 報・ <u>宣傳文書</u>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 ・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 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 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 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 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 함한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 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 재한 <u>宣傳文書</u> 를 配布할 目的 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 ----- -----선 <u>전문서・영상물등(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경우를 포함한 영상물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타</u> ----- ----- ----- ----- ----- ----- -----선전 <u>문서・영상물등을</u> ----- ----- ----- -----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u>宣傳文書</u>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u>宣傳文書</u>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생략)	----- ----- ----- ----- -----. ② ----- ----- -----<u>선전문서・영상물등 기타</u>----- ----- ----- ----- ----- ----- -----<u>선전문서・</u> <u>영상물등을</u>----- ----- -----. ③ (현행과 같음)
--	---